



김해시복지재단

협약서

김해시복지재단 김해시장애인종합복지관·김해시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(이하 복지관)과 김해장애인인권센터·김해시서부장애인인권센터·사)김해장애인자립생활센터·사)김해서부장애인자립생활센터·사)신장유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·사)진영장애인자립생활센터(이하 센터)는 존경과 신의를 바탕으로 상호 발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.

제1조(목적) 본 협약은 복지관과 센터가 신뢰를 바탕으로 지속적이고 유익한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상호 발전을 추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

제2조(협약범위) 복지관과 센터가 상호 협력해야 할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, 이를 위한 세부 실행사항에 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진행한다.

1. 상호발전을 위한 의견 교류 및 정보 교환
2. 장애인 권리 증진과 인권 보장을 위한 정보 교환 및 상호 협력
3. 지역사회 장애인식개선과 장애인 권익옹호에 관한 상호 협력
4. 장애인복지 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 교류 및 정기 간담회 운영
5. 장애인식개선교육 및 캠페인 등 사업 상호 협력
6. 기타 복지관과 인권센터의 사업운영 지원 및 협조에 관한 상호 협력

제3조(권리·의무의 승계) 본 업무협약 체결 후 복지관과 센터의 명칭, 대표자의 변경 등 주요한 변동사항이 발생하여도 본 양해 각서에 따른 권리·의무는 포괄 승계된다.



김해시복지재단

제4조(기밀유지) 복지관과 센터는 본 업무협약에 의거하여 상대방에게 제공되는 각종 정보, 자료 및 공동업무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를 유출하지 아니한다.

제5조(발효, 유효기간, 종료) 본 업무협약은 체결일로부터 2년간으로 한다.

다만, 협약 종료 만료일 30일 이전에 어느 당사자로부터 해지에 관한 서면통보가 없는 한 그 효력은 2년 단위로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. 본 협약서 내용을 증명하기 위해, 2부를 작성하여 복지관과 센터 대표자들이 다음과 같이 서명하고, 각 1부씩 보관한다.

2022. 6. 13.

김해시복지재단 김해시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 김해시복지재단 김해시장예인종합복지관

관 장 조재판 조재판 관 장 여미진 여미진

김해장애인인권센터 김해서부장애인인권센터

소 장 조효영 조효영 소 장 최진기 최진기

(사)김해장애인자립생활센터 (사)김해서부장애인자립생활센터

소 장 조효영 조효영 소 장 최진기 최진기

(사)신장유장애일자립생활지원센터 (사)진영장애일자립생활센터

센터장 김영순 김영순 소 장 최영동 최영동